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5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8.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9.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9차 교육위원회(2024.11.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오경의원)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1년 2,269건에서 2022년 3,035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는 5,050건으로 급증하였음.

특히 2023년 7월에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

육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후 교육부는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인력 및 시설을 충원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Wee클래스가 없던 학교에 이를 설치함으로써 분리공간을 마련하여 즉시분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 인원 등을 확충하여 상담에 대한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기타 지원인력 투입, 비상 연락 시설 설치,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어 학생생활지도 전반을 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학생생활지도는 그 범위가 넓으며 교육행정 주체별로 다양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소요비용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임오경 의원, 강경숙 의원,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